



판매통계일 : 2016. 4. 1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은 반드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판매자모집인에게 구두상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가 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의 성립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은)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를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연금계산전 보험기간(생존연금이 지급되기 전 이후에는 제외) 중에 한하여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에 대한 안내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는 거치형에 한하여 연금계산전까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며, 상속연금형의 경우는 즉시형과 거치형 모두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즉시형 순수종신연금형으로 연금 수령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지환급금이 예시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이익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참조)

예급지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급지보호법에 따라, 예급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하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급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

공시이율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 초과 연복리 1.0%)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이 보험계약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삼성생명령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samsunglife.com (삼성생명 홈페이지)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ia.or.kr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중 사립비(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가 차감된 일부 금액만 적용이율로 부리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콜센터(1588-3115)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BA 제 16-26호, 16-03-11)

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KEB하나은행(2003091001)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045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삼성생명빌딩
삼성생명 콜센터 : 1588-3115

삼성생명 에이스즉시연금보험 B2.2(무배당)

가입 후 바로
여유가 시작되는
든든한 방법



보험사

판매사

삼성생명



KEB 하나은행

퇴직 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객님 현 상황에 따라 가입 후
한달 뒤 또는 1년에서 5년 거치 후부터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실속있는 금융상품이 어디 없을까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교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상속까지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금을 수령하면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상속연금형 선택시)

||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선택하세요!
||



즉시 지급

가입 1개월 후부터 연금 즉시 지급

퇴직금, 사업정리자금 등과 같은 목적으로 가입 후
만 1개월 후부터 매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1종 즉시형)

유연성

자금운용의 유연성

가입즉시 연금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여유자금을
1~5년 동안 거치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종 거치형)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으로 실속있고 여유로운 노후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선택

고객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연금지급방법

순수종신연금형 (기본형, 브릿지연금형) ·
상속연금형 (만기형, 종신형) 등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을
고객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거치형 중 3년~5년 거치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1개월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1회당 최저납입한도 : 1만원 이상, 만원 단위)

- 연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 이내
-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배」
- ※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만큼(단, 연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0%이내) 추가로 납입 가능합니다.
- ※ 추가납입시 계약관리비용 목적으로 추가납입보험료의 1%를 차감한 후 적립되며, 납입 후 도래하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추가납입보험료 기준금액의 0.015%」를 차감합니다.
- (단, 추가납입보험료 기준금액이 0이상인 경우에 한함)
- ※ 추가납입보험료 기준금액은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중도 인출

2종(거치형)限

가입 1개월 후부터 연금지급개시전까지 연 12회,
1회당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에서 인출가능합니다.(최저 10만원 이상, 천원단위)

- 인출제한 :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은 일정수준 유지 필요(기본보험료의 30% 이상)
- 인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최대 2,000원 限)
- ※ 단, 매년(보월연도 기준) 최초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 면제
- 10년 이내의 인출액 총한도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이내로 제한
- ※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시 사업비가 차감되므로 필요자금의 목적에 맞게
반드시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익자 지정

가입시점에 연금선(先)수익자와 연금후(後)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 연금선(先)수익자 : 연금지급개시시 우선적으로
연금수령권(만기보험금 포함, 이하 같은) 가짐
- 연금후(後)수익자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선(先)수익자가
사망한 이후에 연금수령권을 가짐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선(先)수익자, 연금후(後)수익자 모두 사망한 이후에도
지급될 연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금후(後)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수령권을 가지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후(後)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연금선(先)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연금후(後)수익자로 함

연금지급예시

* 본 상품은 일반예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가입설명서·약관·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수종신연금형 ----->

1종 즉시형 여자 4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공시이율 연복리 2.80% 유지시

기본형 | 552회 보증
매월 약 **27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매월 약 20만원

브릿지연금형 | 552회 보증 (552회, 2배)
매월 약 **28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매월 약 21만원

종신지급

←----- 상속연금형(만기형) ----->

10년 만기
매월 약 **18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매월 약 17만원

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2종 거치형 여자 40세, 45세 연금지급개시(5년거치), 일시납보험료 1억원, 공시이율 연복리 2.80% 유지시

기본형 | 492회 보증
매월 약 **32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매월 약 22만원

브릿지연금형 | 492회 보증 (492회, 2배)
매월 약 **34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매월 약 24만원

종신지급

10년 만기
매월 약 **30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매월 약 11만원

사망시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적립액

* 상기 예시된 연복리 2.80%는 평균공시이율 3.5%(2016년 현재)와 공시이율 연복리 2.80% 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평균공시이율 3.5%(2016년 현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1.0%를 말합니다.
* 상기 연금지급액은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연금지급액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보장내용

순수종신연금형 (기본형, 브릿지연금형)

만기보통연금 만기보통연금	기본형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거치형은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기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에서 만기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 (거치형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브릿지연금형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거치형은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기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장개시일에서 만기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거치형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배수(2배)에 따라 브릿지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브릿지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지급배수(2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사망보험금 (2종 거치형 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단,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기간은 제외) 중 사망했을 때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적립액

상속연금형 (종신, 기본형)

생존 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중 보장개시일부터 만기개월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까지 (거치형은 매월 계약해당일)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에서 만기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거치형은 연금지급개시일)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증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

* 연금계약적립액 : 연금지급개시 전에는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보험료 중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상기 예시된 이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납입일부터 일지개산에 의하여 적립하고 매월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유)을 차감하며,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
단, 중도인출시에는 중도인출금 및 인출수수료를 (단, 매년(보험연도 기준) 최초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 면제)를 차감

1. 계약소멸시유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보험기간 종료시
2. 순수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 해지 불가
3.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됨
4. 보증지급횟수란 최소보증지급횟수부터 최대보증지급횟수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횟수인. 횟수는 12의 배수로 함을 말하며, 이하 동일함. 보증지급횟수 중 「최소보증지급횟수」만 10년,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하며 최소 5로 한년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횟수를 말하며, 「최대보증지급횟수」만 100에서 연금지급개시시기를 차감한 년수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횟수를 말함
5. 최소보증지급횟수 중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부(통계청 제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산수준점 이하의 범위를 말하며, 이하 동일함
6. 「브릿지횟수」만 보증지급횟수 이내의 연금월액을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 초기에 집중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연(60회)부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연인 기간에 12를 곱한 횟수 중 계약자가 선택한 횟수를 말한다.
7.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환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8.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환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음
9.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의 연금월액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게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년도의 연금월액(2회분)을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환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음
10. 상속연금형(만기형)의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시점 연금계약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금 및 수수료 제외)」보다 큰 경우 「만기시점 연금계약적립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함

상속연금형 (만기형)

생존 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중 보장개시일부터 만기개월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까지(거치형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장개시일에서 만기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거치형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증기간(거치형은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적립액
만기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2종 거치형의 경우 중도인출금 및 수수료 제외)

가입안내

가입나이	1종(즉시형) : 40 ~ 85세 2종(거치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 (5~1)세
연금지급기간	상속연금형(만기형) : 10 · 15 · 20 · 30년 순수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 : 종신(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해지불가)
가입한도	1,000만원 ~ 50억 * 가입한도 내에서 원 단위 납입가능
납입주기	일시납
연금지급개시	1종(즉시형) : 가입 만 1개월 경과 후(계약해당일) 2종(거치형) : 거치기간(1~5년)종료 후

연금월액 지급예시

[기준 : 여자 4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 *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실제이율은 공시이율이나, 본 상품안내에서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상한) 및 공시이율을 가정하여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기준에 따라 예시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 3.5%(2016년 현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1.0%를 말합니다.
- * 아래 1)에 예시된 연복리 2.80%는 평균공시이율 3.5%(2016년 현재)와 '공시이율 연복리 2.80%(2016년 3월 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 아래 2)에 예시된 연복리 2.80%는 2016년 3월 현재 공시이율입니다.

		1종 : 40세 연금지급개시			2종 : 45세 연금지급개시(5년거치)					
		최저 보증 이율	연복리 2.80% 유지시 1)	연복리 2.80% 유지시 2)	최저 보증 이율	연복리 2.80% 유지시 1)	연복리 2.80% 유지시 2)			
상속 연금형	종신 기본형	종신	11	21	21	종신 기본형	종신	12	24	24
	만기형	10년 만기	8	18	18	만기형	10년 만기	11	30	30
		20년 만기	8	20	20		20년 만기	9	26	26
	30년 만기	8	20	20	30년 만기	9	25	25		
순수 종신 연금형	기본형	120회 보증	20	27	27	기본형	120회 보증	23	32	32
		552회 보증	20	27	27		492회 보증	22	32	32
		720회 보증	19	26	26		660회 보증	21	30	30
	브릿지 연금형	120회 보증 (120회, 2배)	33	42	42	브릿지 연금형	120회 보증 (120회, 2배)	36	49	49
		552회 보증 (552회, 2배)	21	28	28		492회 보증 (492회, 2배)	24	34	34
	720회 보증 (720회, 2배)	19	26	26		660회 보증 (660회, 2배)	21	31	31	

- * 상기 연금지급액은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연금지급액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 * 순수종신연금형(기본형, 브릿지연금형)은 연금지급시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연금지급시 사망시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치형은 연금지급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소멸됩니다.
- *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러거나, 환입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생존연금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공시이율이 계속하여 동일하더라도 브릿지연금형의 경우 브릿지횟수 이후 생존시 상기 예시금액을 지급해주시는 나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이 상품의 경우 가입시 선택하신 보험의 종류(즉시형, 거치형, 거치기간(연금지급개시나이) 및 연금지급형태(순수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순수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연금지급개시 신청시에 연금지급형태를 순수종신연금형(기본형, 브릿지연금형) 중에서 변경가능 합니다.
- * 상기 예시된 연금액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예시된 순수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횟수는 ① 최소보증지급횟수(10년,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번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함. ② 기대여명 년수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함. ③ 최대보증지급횟수(100회)이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차감한 년수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 횟수입니다.

해지환급금예시표

(단위 : 원)

- *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실제이율은 공시이율이나, 본 상품안내에서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상한) 및 공시이율을 가정하여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기준에 따라 예시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 3.5%(2016년 현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1.0%를 말합니다.
- * 아래 1)에 예시된 연복리 2.80%는 평균공시이율 3.5%(2016년 현재)와 '공시이율 연복리 2.80%(2016년 3월 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 아래 2)에 예시된 연복리 2.80%는 2016년 3월 현재 공시이율입니다.

1종 [여자 40세, 일시납 1억, 1종, 상속연금형 10년만기]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금계약적립액	96,065,320	96,894,710	97,749,160	98,629,440	100,000,000
해지환급금	96,102,320	96,924,710	97,772,160	98,644,440	100,000,000
환급률	96.1%	96.9%	97.7%	98.6%	100.0%

연복리 2.80% 유지시 1)

연금계약적립액	96,041,900	96,838,490	97,680,320	98,569,940	100,000,000
해지환급금	96,078,900	96,868,490	97,703,320	98,584,940	100,000,000
환급률	96.0%	96.8%	97.7%	98.5%	100.0%

연복리 2.80% 유지시 2)

연금계약적립액	96,041,900	96,838,490	97,680,320	98,569,940	100,000,000
해지환급금	96,078,900	96,868,490	97,703,320	98,584,940	100,000,000
환급률	96.0%	96.8%	97.7%	98.5%	100.0%

2종 [여자 40세, 일시납 1억, 2종, 상속연금형 10년만기, 45세 연금지급개시(5년 거치)]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납입보험료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금계약적립액	96,782,670	99,098,510	101,484,350	101,692,170	102,015,720	100,000,000
해지환급금	96,852,670	99,158,510	101,532,350	101,733,170	102,044,720	100,000,000
환급률	96.8%	99.1%	101.5%	101.7%	102.0%	100.0%

연복리 2.80% 유지시 1)

연금계약적립액	98,024,010	102,972,580	108,202,140	106,737,740	104,383,750	100,000,000
해지환급금	98,094,010	103,032,580	108,250,140	106,778,740	104,412,750	100,000,000
환급률	98.0%	103.0%	108.2%	106.7%	104.4%	100.0%

연복리 2.80% 유지시 2)

연금계약적립액	98,024,010	102,972,580	108,202,140	106,737,740	104,383,750	100,000,000
해지환급금	98,094,010	103,032,580	108,250,140	106,778,740	104,412,750	100,000,000
환급률	98.0%	103.0%	108.2%	106.7%	104.4%	100.0%

- * 상기 해지환급금은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하신 보험료 중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예시된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된 연금계약적립액과 보장계약적립액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 * 순수종신연금형(기본형, 브릿지연금형)의 경우는 거치형에 한하여 연금지급개시후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며, 상속연금형의 경우는 즉시형 · 거치형 모두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 순수종신연금형(기본형, 브릿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후 해지가 불가하므로 해지환급금이 예시되지 않습니다.
-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해지환급금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 * 상기 예시된 환급률은 경과년수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납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만 차감)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1년 공시이율 변동내역

경과월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5.10	'15.11	'15.12	'16.1	'16.2	'16.3
공시이율	3.40%	3.28%	3.15%	3.15%	3.13%	3.10%	3.07%	3.00%	2.95%	2.92%	2.92%	2.84%	2.80%

- * 이 보험상품은 객관적 외부지표공시(「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인플레이션수익률」, 및 「당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포함한 이율)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 * 공시이율 변동(가입 후 10년이하 연복리 1.5%, 10년초과 연복리 1.0% 최저보증)에 따라 연금지급액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합니다.